

합신 전 노회와 교회 앞에 고함

제110회 총회 서기부의 사실조작 의혹을 고발합니다!

본 문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교단의 거룩한 질서와 바른 신학을 수호하기 위해 **제110회 총회 서기부가 감행한 심각한 행정적 절차 위반 및 회의록의 부당한 임의 변경 행위를 고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교단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권징의 기초 자료이자, 외부 기독교 언론 및 공청회 석상에서 진실을 밝힐 법적·신학적 선언문입니다.

1. 사건의 본질: 총회 현장의 진실과 결의 사항

모든 진실의 출발점은 **제110회 총회 현장에서 대다수 총대들이 표결하여 채택한 실제 결의 사항**에 있습니다. 2025년 9월 23일~25일 평창에서 열린 제110회 총회 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가 제출한 **원안(동의안)**은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를 1년간 이단성으로 규정하여 교회와 성도를 피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제111회 총회에 최종 보고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나이다.”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서울노회 최채운 총대는 다음과 같은 **개의를** 발의했습니다:

“기쁨의교회가 노회에 소속돼서 노회의 지도를 받겠다고 하니, 자비를 베풀어 이단성 규정을 1년간 연기하고, 노회에 가입하게 해서, 1년 동안 노회의 조사와 지도를 받게 하고, 1년 후 노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이단성을 재론 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어 수원노회 소승길 총대의 “기쁨의교회가 수원노회에서 지도를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노회가 받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1년 정도 보류해서 그분이 지도를 받지 않으면 그때는 정확하게 이단으로 규정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참고 발언이 있은 후, 개의안과 원안을 두고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표결 결과는 **개의안 63표 대 원안 50표로, 최채운 총대의 개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제110회 총회에 참석한 여러 총대들의 일치된 증언이며, 총회 실황이 녹화된 동영상과 녹취록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2. 제1차 왜곡: 총회 서기부의 결의사항 임의 변경 및 왜곡 통지 정황 (2025. 10. 1)

총회 서기부는 총회 직후인 2025년 10월 1일, 각 노회에 총회 결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첫 번째 왜곡을 감행했습니다. **총회 서기가 통지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쁨의교회가 심각한 이단성이 있다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지적을 인정하고, 지도를 받겠다고 함으로 그 보고를 1년 유예하기로 하다.”

총회 서기부는 현장에서 가결된 개의안의 핵심 주체이자 명시적 명령인 ‘**노회 가입을 통한 노회의 조사와 지도**’라는 자구 자체를 의도적으로 말살하였습니다. 치리회인 ‘**노회의 지도**’는 사라지고 ‘**이대위의 지도**’를 받겠다고 한 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장 발언이나 청원 어디에도 없었던 ‘**교회 스스로 심각한 이단성을 인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무단으로 가공·삽입했습니다. 이는 “노회에 가입시켜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개의안의 본질을 정면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의교회가 마치 이단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노회(치리회)에 가입하여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의안의 핵심 내용을 제거하여, 교회 영입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원천 봉쇄하려 한 **명백한 허위 공문서 송달**이었습니다.

3. 특정 세력과의 사전 조율 및 편파적 행정 처리 의혹

이후 기쁨의교회의 수원노회 가입이 불발되었고, 중서울노회는 총회 개의안의 내용(‘노회에 가입하게 해서 1년 동안 노회의 조사와 지도를 받게 한다’)과 헌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척도로 삼아 2026년 1월 5일 제69회 제1차 임시회에서 기쁨의교회를 영입하였습니다. 이는 총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중서울노회 영입위원회 위원으로서 만장일치 가결에 동참했던 조석균 목사가 돌연 입장을 바꾸어 김용주 목사와 함께 2026년 1월 30일 총회에 소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청서에는 참 이상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에 대한 이단성 규정을 1년 유예하고, 제111회 총회에 보고케 한다”**는 내용을 적어 냈습니다.

이 문구는 현장에서 가결된 ‘노회 가입, 노회의 조사 및 지도 후 재론’이라는 최채운 총대의 개의안 핵심 내용이 통째로 제거된 가공의 문구였습니다. 조석균 김용주목사는 도대체 어디서 이 문구의 내용을 어디서 가져 온 것일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사흘 뒤인 2026년 2월 2일 밤(이날은 조석균, 김용주 목사의 소청서가 총회 재판국에 접수된 날입니다), 총회 서기가 총회 치리 협력위원회에서

‘총회임원회 입장’이라며 제시한 회의자료에 정확히 동일한 문구인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에 대한 이단성 규정을 1년 유예하고, 제111회 총회에 보고케 한다”**가 등장합니다.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문장이 등장한 것일까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총회 서기부와 중서울노회 내 반대파 세력의 소청서 문구가 완벽히 일치**한다는 점은, 이들이 사전에 긴밀히 교감을 했거나, 총회의 결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정황증거입니다.

총회 서기부는 이 왜곡된 논리를 바탕으로 중서울노회는 물론 교단 내에 **“중서울노회가 이단성이 있는 교회를 영입했으니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여론을 조장했고, 결국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총회재판국마저 중서울노회의 정당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4. 제2차 왜곡: 제110회 총회보고서의 결의사항 임의 변경 (2026년 3월 배포)

총회 서기부의 부당한 행정 처리는 **2026년 3월 공식 배포된 ‘제110회 총회보고서’**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공식 문서에 기록된 내용은 **총회 결의 내용을 완전히 난도질한 변조물**이었습니다.

[공식 배포된 총회보고서 내용]

“청원1 : 용인 기쁨의 교회 정의호 목사에 대한 이단성과 교류 및 참여 금지 조사 청원 건은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를 1년간 이단성으로 규정하여 교회와 성도를 피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제111회 총회에 최종 보고케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다.

개의원 :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에 대한 이단성 규정을 1년 유예.

원안 : 이대위안

두 안을 가지고 표결하니, 개의원 63표, 원안 50표로 개의원으로 받기로 하다.”

이 기록은 치밀하게 계산된 왜곡의 결과물입니다.

1) 발의 안건의 왜곡: 63표라는 압도적 표로 채택된 최채운 총대의 개의원 원문, “기쁨의교회가 노회에 소속돼서 노회의 지도를 받겠다고 하니, 자비를 베풀어 이단성 규정을 1년간 연기하고, 노회에 가입하게 해서, 1년 동안 노회의 조사와 지도를 받게 하고, 1년 후 노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이단성을 재론하기로 동의합니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총회 서기부는 이를 “이단성 규정을 1년 유예”라는 단 한 줄의 왜곡된 문장으로 축소 변개했습니다.

2) **행정적 기만행위**: 개의안의 본질이자 핵심이었던 ‘노회 가입’, ‘노회의 조사와 지도’, ‘노회 보고를 바탕으로 재론’이라는 단어를 통째로 삭제해 버렸습니다. 왜 지웠겠습니까? 중서울노회가 총회 결의의 본뜻에 따라 정당하게 기쁨의교회를 가입시켜 공적으로 치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명분과 법적 근거를 행정 문서상에서 말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3) **결론 왜곡**: 총회 서기부는 개의안의 알맹이(노회 가입 및 조사·지도 후 재론)를 전부 삭제함으로써, 이대위의 원안대로 ‘이단성 규정’ 자체는 성립된 채 시간만 미뤄진 것처럼 결론을 유도했습니다. 개의안의 탈을 씌워놓고 알맹이는 원안의 논리를 밀어 넣은 중대한 결의사항 변조 및 왜곡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대위의 ‘이단성 규정 및 유예’라는 결론으로 귀착되도록 회의록을 왜곡한 것입니다.

5. 총회서기부의 문구 왜곡이 교단에 가져온 파국적 결과

장로교 정치 질서에서 총회 서기부는 총회 현장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기록관’의 절대적인 책무를 가집니다. 결의 사항을 자의적으로 수정하거나, 특정 노회를 공격하기 위해 가짜 문구를 가공하여 보고서에 등재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치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총대들의 결의를 왜곡한 행정적 기만행위이자 총회 규칙 위반**입니다.

총회 서기부의 이러한 **사실 왜곡과 회의록 변경 행위로 인하여**:

총회 결의(‘노회에 가입하게 해서 1년 동안 조사와 지도를 받게 하다’)를 준수하기 위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교회를 영입한 중서울노회는, 억울하게 “총회 결의를 위반하고 이단 교회를 영입한 노회”라는 **부당한 낙인**이 찍혔습니다.

총회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 총회재판국마저, 최채운 총대의 개의안 원문이 아닌 **총회 서기부가 왜곡 변조한 총회 회의록을 근거로 삼아 결과적인 오판(영입 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총회 서기부의 왜곡 통지와 조작 변조된 총회 회의록으로 인해 총회 산하 노회는 물론 지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심지어는 **합신 교수회까지도 중서울노회의 적법한 결정을 오해**하고, 교단 신문인 개혁신보를 동원하여 **수차례 진실을 외면한 보도와 성명서, 서명운동까지 감행**하며 중서울노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6. 우리의 요구 : 공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우리는 합신 본연의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정신으로 돌아가 **이 중대한 과오를 엄중히 치리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합신 전 노회와 교회는 공의의 이름으로 함께 일어설 것을 호소합니다.

왜곡 기록된 총회회의록 원상 복구와 사죄 :

총회 임원회는 제110회 총회 당시 가결된 개의안의 본질이 왜곡된 채 기록된 총회회의록의 내용을 **총회의 결의(개의안 원문)대로 즉각 정정하고 중서울노회와 교단 산하 교회 앞에 엄숙히 사죄 하십시오!**

총회재판국의 영입 취소 판결의 법리적 무효 선언 :

제110회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의 핵심 내용을 제거하고 사실과 다르게 조작 변조된 총회 회의록을 기반으로 내려진 **총회재판국의 “중서울노회의 기쁨의교회 영입 취소 판결”은, 그 절차적·법리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총회 서기부 및 관련자 엄중 권징:

총회 서기부의 직권을 남용하여 총대들의 거룩한 표결 결과를 임의로 조작, 변경하여 중서울노회를 압박하고 교단 내에 큰 혼란과 분란을 야기한 **총회 서기를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을 총회 헌법 권징조례에 따라 응당한 조치로 엄격히 권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감추어진 거짓을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합신 교단이 오직 진리와 공의 위에 바로 서기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끝까지 바로잡을 것입니다.

2026년 7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중서울노회